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58호의5서식] <개정 2015.3.13.>

주 택 마 련 저 축 납 입 증 명 서

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
③ 주 소			
④ 저축의 종류		⑤ 가입일자	

( )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

⑥ 월별	⑦ 납입일자	⑧ 납입금액	비 고	⑥ 월별	⑦ 납입일자	⑧ 납입금액	비 고
1				7			
2				8			
3				9			
4				10			
5				11			
6				12			
⑨ 연 간 합 계 액				사 용 목 적		특별공제 신청용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(저축취급기관장) 귀하

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(저축취급기관장) [인]

작 성 방 법

1.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"⑦ 납입일자"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.
2. ⑧, 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,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"⑨ 연간합계액"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3. 해당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